

영등포구의회
제177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
운영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【김화영의원 대표발의】



2013. 9. 10

運 營 委 員 會
專 門 委 員 金 基 永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입법·법률고문
운영조례안』

檢 討 報 告 書

1. 경 과

의안 제235호로 2013년 9월 3일 김화영의원 외 9명으로 부터 발의되어 201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2. 제안이유

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등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입법·법률고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입법·법률 고문의 직무를 규정함 (안 제2조)

나. 입법·법률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함 (안 제3조)

다. 입법·법률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교수 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 위촉함 (안 제4조)

라. 입법·법률고문의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음 (안 제5조)

마.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 및 재위축 절차를 규정함(안 제6조)

바. 입법·법률 고문의 고문료 및 회의비 등의 지급기준을
규정함 (안 제8조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5. 검토의견

○ 이 조례 제정안은 의회에 입법·법률 자문제도를 도입함으로써
의회의 입법 및 법률 업무에 대한 자문과 상위법 및 관련법규의
해석 등 제반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운영근거를
구체화하고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
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임.

○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
- 안 제2조에 입법·법률고문의 직무 및 의무에 관한 사항을
규정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 입법·고문을 3명 이내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,
- 안 제4조 및 제5조에 입법·법률 고문은 변호사, 법률학교수
및 입법분야의 경험자중 운영위원회 추천을 거쳐서 의장이

위촉하도록 하고 임기전이라도 사임의사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,

- 안 제6조 및 제7조에 입법·법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직무와 관련된 업무의 협의를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안 제8조 및 제9조에는 입법·법률 고문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및 회의비, 소송 수임료 등의 지급기준을 명확히 규정하여 예산지원의 합법성을 도모하였음.

○ 본 조례안은 시대의 급격한 변화와 행정이 전문화되고 복잡한 현실에서 의회의 입법·법률 등에 관련된 제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「지방자치법」 제38조제2항에 “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명시하고 있으며, 본 조례제정안과 관련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의회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16개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중 14개 의회에서 입법고문 제도를 운영중인 실정으로 우리 의회도 조례로 제도화 하려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. 검토결과 상위법 위반 등 법체계나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 짐.

- 참고로 서울시 14개 의회의 입법고문제도 운영 실태를 보면 위촉인원은 2~4명, 임기는 2~3년이며, 고문료는 15~25만원을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음. (세부내용은 붙임 “입법·법률 고문단 운영 현황” 참조)

입법· 법률 고문단 운영 현황 (의회별)

연번	구의회별	제정여부	운 영 일	인 원	임 기	고문료(월)	비 고
1	영등포구	제정중	2014. 1. 1	3명 이내	2년	20만원	
2	종로구	제정	2011. 4	3명 이내	2년	20만원	
3	중구	제정	2000. 1	3명 이내	2년	20만원	
4	용산구	제정	2007. 6	3명 이내	2년	20만원	
5	성동구	제정	2007. 2	2명 이내	2년	15만원	
6	광진구	제정	2007. 3	3명 이내	2년	-	※운영하지 않음
7	동대문구	미제정		-	-	-	의정자문위원회 운영
8	중랑구	미제정		-	-	-	
9	성북구	미제정		-	-	-	
10	강북구	제정	1997.12	4명 이내	없음	15만원	
11	도봉구	제정	2003.12	3명 이내	2년	15만원	
12	노원구	제정	1997. 1	2명 이내	없음	20만원	
13	은평구	제정	2006.12	3명 이내	2년	15만원	의정자문위원회 운영
14	서대문구	미제정		-	-	-	
15	마포구	미제정		-	-	-	
16	양천구	제정	2009. 5	2명 이내	2년	20만원	
17	강서구	제정	2012. 2	3명 이내	2년	15만원	
18	구로구	미제정	-	-	-	-	의정자문위원회 운영
19	금천구	제정	2011. 3	2명 이내	2년	20만원	
20	동작구	제정	1999. 6	3명 이내	2년	15만원	※운영하지 않음
21	관악구	미제정	-				
22	서초구	제정	2002. 3	3명 이내	2년	25만원	자문료 : 건당/150,000원 별도지급
23	강남구	제정	2000. 3	3명 이내	2년	20만원	의정자문위원회 운영
24	송파구	미제정	-				
25	강동구	제정	1999.10	4명 이내	2년	15만원	의정자문위원회 운영

- 조 레 : 제정 16구(미운영2구포함) . 미제정 9구
- 인 원 : 2명 4구 . 3명 10구. 4명 2구
- 임 기 : 2년 14구 . 3년 1구. 임기없음 2구
- 고문료(월) : 15만원 7구 . 20만원 8구 . 25만원 1구

참 고 자 료

1

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38조(지방의회의 의무 등) ① 지방의회는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지방의회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는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